



2018년 충청북도 재정공시(예산)

2018. 3.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3
2-3. 지역통합재정통계	4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5
3-2. 재정자주도	6
3-3. 통합재정수지	7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8
4-2. 성인지 예산현황	9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0
4-4. 성과계획서	1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현황	13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14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15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6
5-4. 지방교부세 인세티브 현황	16
[첨부1]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현황	17

2018년 충청북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충청북도 재정공시 제8호(2018. 2. 28.)

충청북도



- ◆ 우리 도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조 6,53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3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조 9,906억원)보다 4조 3,37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1,10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조 5,5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895억원입니다.
- ◆ 우리 도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2.3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6.79%입니다.
- ◆ 우리 도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8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주요 재정지표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합니다.
 - 이와 관련 하여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bu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산담당관 이혜영(220-221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북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536	43,236	3,300	89,906	83,552	6,354
	세출예산	46,536	43,236	3,300	89,906	83,552	6,35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2.35	31.80	0.55	39.03	38.26	0.7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6.79	46.78	0.01	50.2	49.11	1.09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48	1,207	△1,355	△436	3,393	△3,82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53,600	3,715,186	-	465,803	472,6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701,504	3,888,910	4,190,340	4,323,586	4,653,6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63,987	100.0	3,215,709	100.0	3,326,688	100.0	3,447,953	100.0	3,715,186	100.0
지방세	696,231	22.72	798,200	24.82	863,100	25.94	945,726	27.43	1,032,114	27.78
세외수입	66,073	2.16	68,469	2.13	61,954	1.86	48,690	1.41	46,766	1.26
지방교부세	561,603	18.33	514,000	15.98	504,750	15.17	495,000	14.36	514,000	13.84
조정교부금 등	-	0.00	-	0.00	-	0.00	-	0.00	-	0.00
보조금	1,530,086	49.94	1,669,081	51.90	1,700,340	51.11	1,688,507	48.97	1,837,431	49.46
지방채	-	0.00	-	0.00	-	0.00	-	0.00	-	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9,994	6.85	165,959	5.16	196,544	5.91	270,030	7.83	284,875	7.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7,233백만원(7.75%)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재원별로 살펴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부담금수입 등이 감소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95% 감소하였습니다.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53,600	3,715,186	-	465,803	472,6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701,504	3,888,910	4,190,340	4,323,586	4,653,6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63,987	100.0	3,215,709	100.0	3,326,688	100.0	3,447,953	100.0	3,715,186	100.0
일반 공공 행정	285,361	9.31	324,987	10.11	370,718	11.14	402,053	11.66	469,377	12.63
공공질서 및 안전	182,732	5.96	197,000	6.13	262,396	7.89	297,488	8.63	312,233	8.40
교육	164,449	5.37	173,877	5.41	177,671	5.34	210,291	6.10	222,747	6.00
문화 및 관광	116,878	3.81	121,250	3.77	172,909	5.20	170,521	4.95	139,743	3.76
환경 보호	274,457	8.96	240,933	7.49	218,866	6.58	208,434	6.05	196,595	5.29
사회 복지	964,354	31.47	1,029,145	32.00	1,065,866	32.04	1,136,929	32.97	1,312,825	35.34
보건	54,921	1.79	59,270	1.84	60,445	1.82	66,768	1.94	66,807	1.80
농림해양수산	391,758	12.79	427,886	13.31	432,191	12.99	405,634	11.76	420,970	11.33
산업·중소기업	104,807	3.42	85,876	2.67	87,513	2.63	110,952	3.22	99,510	2.68
수송 및 교통	175,907	5.74	159,777	4.97	147,030	4.42	124,702	3.62	142,965	3.85
국토 및 지역개발	78,273	2.55	109,370	3.40	108,226	3.25	100,077	2.90	119,421	3.21
과학기술	-	0.00	-	0.00	-	0.00	-	0.00	-	0.00
예비비	36,835	1.20	38,366	1.19	57,985	1.74	35,943	1.04	24,646	0.66
기타	233,255	7.61	247,974	7.71	164,873	4.96	178,159	5.17	187,347	5.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7,233백만원(7.75%) 증가하였으며, 체육부문의 감소로 문화및 관광분야 예산이 18.05% 감소하였고, 대기관련 부문의 예산은 121.08% 증가하였으나, 폐기물 부문의 감소(33.34%)로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습니다.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7,199,656	7,827,960	628,304	8.73
충청북도	4,323,586	4,653,600	330,014	7.63
충북교육청	2,260,042	2,533,206	273,164	12.09
공사·공단	387,870	345,544	△42,326	△10.91
출자·출연기관	228,158	295,610	67,452	29.5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1개) : 충북개발공사
-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1개) :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 출연기관(12개) :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여성재단, 충북테크노파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3] 2018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참조하세요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35 (25.95)	3,560,187 (3,560,187)	1,151,756 (923,880)	2,351,431 (2,351,431)	57,000 (-)	- (284,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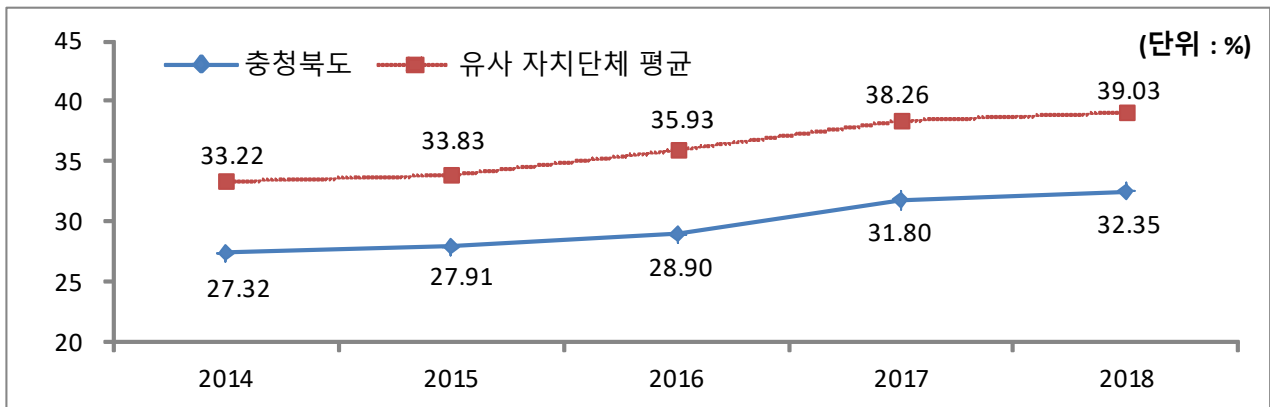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7.32 (21.52)	27.91 (23.69)	28.90 (24.61)	31.80 (25.76)	32.35 (25.9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5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자체세입 예산이 9.59% 증가한 반면 이전재원이 7.69% 증가하여 자체세입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는 유사 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9.03%보다 6.68%나 낮은 32.35%로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충청북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6.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6.79 (40.39)	3,560,187 (3,560,187)	1,665,756 (1,437,880)	1,837,431 (1,837,431)	57,000 (-)	- (284,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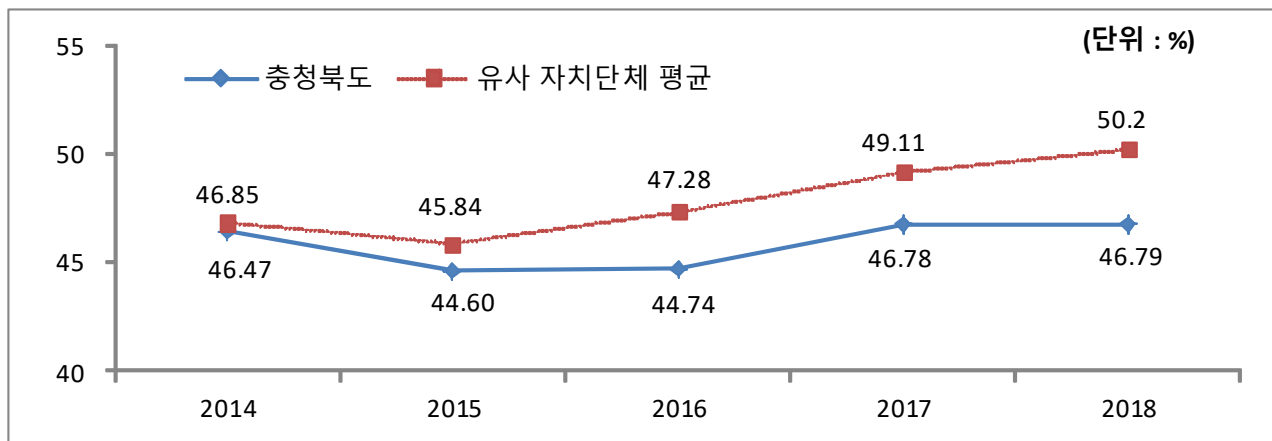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6.47 (40.67)	44.60 (40.39)	44.74 (40.46)	46.78 (40.74)	46.79 (40.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0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7.73% 증가하고 보조금수입이 8.82%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은 7.75% 증가하여 자주재원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는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50.2% 보다 3.41% 낮은 46.79%로 비교적 재정자주도가 낮은 실정으로, 이는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비율이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음을 의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충청북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49,437	3,903,467	58,671	61,055	2,384	141,644	3,905,851	△156,414	△14,770
일반회계	3,515,687	3,424,607	4,500	-	△4,500	120,000	3,420,107	95,580	215,580
기타 특별회계	222,479	452,086	11,973	12,555	582	21,644	452,668	△230,189	△208,545
기 금	11,271	26,774	42,198	48,500	6,302	-	33,076	△21,805	△21,80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72,555	△176,548	△216,289	△156,865	△156,414
통합재정수지 2	△22,567	△2,029	△11,378	120,749	△14,77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1은 1,564억원의 적자로 전년수준과 비슷하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는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전환으로 이월 수입이 확대되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48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99,286	5,253,173	5,483,741	5,695,315	5,866,625	27,298,140	4.10
자 체 수 입	1,115,186	1,139,585	1,166,974	1,194,588	1,223,970	5,840,303	2.40
이 전 수 입	2,719,723	2,906,347	3,095,896	3,259,539	3,413,125	15,394,630	5.80
지 방 채	63,000	70,000	75,000	80,000	50,000	338,000	△5.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1,377	1,137,241	1,145,871	1,161,188	1,179,530	5,725,207	1.70
세 출	4,999,286	5,253,173	5,483,741	5,695,315	5,866,625	27,298,140	4.10
경 상 지 출	1,110,277	1,127,815	1,143,717	1,147,508	1,130,270	5,659,587	0.40
사 업 수 요	3,889,009	4,125,358	4,340,024	4,547,807	4,736,355	21,638,553	5.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9	101,159
여성정책추진사업	10	7,16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37,00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3	56,99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4-2]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조하세요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북도는 모델 2안과 3안을 혼용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653,600	176,983	2~3안 준용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4-3]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현황을 참조하세요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계	27	131	301	320	4,180,990	3,868,482	312,508
공보관	1	1	4	4	4,270	4,082	188
감사관	1	1	6	2	359	303	56
여성정책관	1	2	6	6	35,479	32,724	2,755
기획관리실	1	10	16	21	247,095	258,486	△11,391
재난안전실	1	8	16	18	167,742	162,983	4,759
행정국	1	7	32	27	598,224	511,895	86,330
보건복지국	1	9	13	19	1,490,547	1,306,163	184,384
경제통상국	1	16	25	30	135,567	148,082	△12,515
농정국	1	6	18	22	363,575	354,111	9,463
문화체육관광국	1	8	20	21	201,251	226,971	△25,720
균형건설국	1	8	17	22	223,254	181,544	41,710
바이오환경국	1	10	15	21	211,792	231,146	△19,354
소방본부	1	18	37	35	310,203	288,016	22,188
의회사무처	1	1	4	4	10,243	9,983	260
자치연수원	1	1	3	3	5,762	5,644	117
농업기술원	1	3	14	16	43,331	36,054	7,277
보건환경연구원	1	1	3	5	9,439	8,294	1,145
도로관리사업소	1	3	5	7	39,204	35,424	3,780
산림환경연구소	1	1	3	3	24,776	23,459	1,317
축산위생연구소	1	5	11	11	13,195	12,749	446
농산사업소	1	2	10	6	3,672	3,448	223
청남대관리사업소	1	1	2	4	10,911	8,643	2,268
내수면산업연구소	1	1	3	1	5,991	6,040	△49
서울세종본부	1	1	1	1	575	557	18
북부출장소	1	1	3	1	973	1,106	△133
남부출장소	1	2	3	2	4,141	4,569	△428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	4	11	8	19,419	6,004	13,41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4-4]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2.35	46.79	35.34	27.15	60.01	11.63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4-5\]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조하세요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0	167	-
	부단체장		2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77	1,472	△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27	245	△7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1	
	의원국외여비		84	
지방보조금		83,709	39,134	△44,57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54천원/1인	5,773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1인	1,091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s.go.kr>)
-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있어,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이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 2018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강화됨에 따라 총액배분 한도 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5-1. **교**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053	△10,910
인건비 절감	53	606
지방의회경비 절감	11	-
업무추진비 절감	116	17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715	△7,20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512	△4,914
지방청사 관리·운영	646	426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2,127	△4,4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2,535	3,31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254	△6,390
경상세외수입 확충	700	10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6	△1,308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62	△13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4.예정)